



회계계약제도 운영 질의 · 회신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I . 지방계약관련 질의회신

1. 시설공사 적격심사 관련 질의

| 질의 |

- 질의 1)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Ⅱ.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 인정기준. 제1항에 의거 시공경험평가를 할 때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의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 협회에서 2007년도말 실적을 확정하지 않았을 경우 2008년 5월 15일에 입찰공고를 했다면 실적 평가시 최근 3년이란 어느 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 질의 2) :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 Ⅲ.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 인정기준. 제1항에서 “입찰참가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 협회에 신고한 실적중 연도 말 단위로 최종 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에 관련 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의 최종 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된 공사의 실적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각각의 실적을 중복하여 평가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 되어 있는데, 상기 규정 적용을 질의1의 최근 3년간

기간을 적용할 경우 관련협회에서 연도별 실적확정 최종년도 다음연도 1월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된 공사의 실적(발주청 발급 실적증명서) 합산하여 평가하는지 여부

- 질의 3) : 적격심사후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신규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 질의 1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안부 예규)」〔별표 1〕 II.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 인정기준. 제1항에 의거 시공경험평가를 할 때에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의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며, 귀 질의 경우 2006년도, 2005년도, 2004년도 실적이 평가대상 기간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동 기준 (별표 1) III. 최근 3년간 이상 업종별 실적 인정기준 제1항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 II. 제1항에 의한 실적이외에 추가로 3년간 업종별 실적의 최종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된 공사의 실적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해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전문공사의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업종별 실적의 최종연도 다음연도 1월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실적은 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적격심사 후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라면 기존 입찰 및 적격심사는 종료되었으므로 새로운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시설공사 수의계약 대상여부 질의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가 태풍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방파제 축조공사의 금차공사는 전차공사에서 하중재하를 가하고 있던 TTP를 제거한 후 기초부분(수중사석 및 피복석) 상부에 상치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제거된 TTP를 방파제 외곽부로 보강하여 완성단면으로 축조하는 사업으로서 장래에 연약지반침하로 인한 상치콘크리트의 균열이 발생 할 우려가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상 자에 대한 책임이 곤란한 경우로서 수의계약대상인지 여부

| 회 신 |

-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방파제 축조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5호)」 IV-3-가-①에 규정된 “수의계약 제외 대상 공사(하천축제, 하천호안, 도로포장, 도로 개설, 상하수도접합, 조경, 토공, 준설 및 이에 유사한 토목공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상황은 현장상태와 설계서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관련 질의

| 질 의 |

- 건물철거공사 재활용 폐기물 위탁처리·운반 용역계약의 낙찰자로 결정되기 이전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한 업체의 입찰보증금을 세입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세입조치 하도록 하고 있으며,
- 낙찰자의 결정은 위 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그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82호)」 제8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자체 없이 통지”하게 되는 바,
- 이러한 절차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되기 이전에는 위 법 제12조제3항의 입찰보증금을 세입조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결격사유 관련 질의

| 질의 |

- ○○대학교으로부터 2007.12.01~2007.12.31까지 1개월간 부정당업자로 제재(사유 :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포기)받은 ○○사업자가 ○○문화회관 소액수의 견적 입찰로 2008.06.05 공고한 29.5백만원 상당의 도시구매 입찰에 참가하여 1순위 낙찰 예정자로 선정됨에 따라, 위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IV.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및 계약금액 결정요령, 1. 소액 수의계약, (2) 소액수의계약 요령, 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⑦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 선정시 결격사유 ④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 |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IV.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및 계약금액 결정요령, 1. 소액 수의 계약, (2) 소액수의계약 요령, 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⑦ 항의 결격사유 ④에 의하면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포기”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므로 위 ⑦ 항에 의거한 결격사유 ④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수의계약운영요령 중 결격사유 판단주체에 관한 질의

| 질의 |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5호)의 “IV. 수의계약대상자 선정 및 계약금액 결정 요령” 중에서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사실 판단주체가 누구인지(자치단체장인지 계약담당자인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 91조에 회계관계공무원(경리관 포함)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재무회계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이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이에 해당되므로,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자 결정시 사실판단을 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계약 사무를 위임받은 “계약담당자”라고 할 것입니다.

6.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질의

| 질 의 |

- 철강재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6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기성금을 지급 받은 부분에 대하여도 조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6항에 의하여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 증감율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대한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는 바,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2항에 따르면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동조 제5항은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계약금액 조정의 방법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37호)」 제7조 및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에 의하면,
 - 위 예규 시행일(2008.5.15) 이전에 특정자재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한 조정기준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기성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질 의 |

- 자치단체에서 기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로 발주된 □□정수장 건설 및 고도처리시설 공사 중 에너지 절약사업 일환으로 동 시설에 태양광발전 설비 추가설치를 설계변경을 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인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시공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나.
-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처의 계약담당자가 현장상태 및 설계서,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8.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질의

| 질 의 |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계약이행 중 폐기물관리법에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바,

- 계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그 위반 행위가 위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 특허공법 관련 공사의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와 관련하여 특허 또는 신기술이 일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 있어서 특허권자(신기술개발자)와 특허(통상실시권) 또는 신기술 사용협약을 맺은 업체를 특정인으로 보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 또한 특허 또는 신기술이 일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 있어서 특허권자(신기술개발자)가 공사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면허보유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 특허 또는 신기술이 일부 포함된 공사와 관련하여 특허법 제102조제2항에 의한 특허에 대한 통상 실시권이 있는자의 경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마”목 규정에 따라 당해 “통상 실시권”의 내용이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행안부 예규 “수의계약운용요령(178호)”에 의한 평가결과 수의계약요건에 해당된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신기술 개발자와 신기술 사용협약을 맺은 업체의 경우 단순히 동 협약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한편,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입찰 참가자격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II-다-(3)에 따라 면허 등이 필요한 공동도급에 대하여 면허(등록) 미보유자와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공사에 필요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0. 학술용역 수의계약 관련 질의

■ 질의 ■

- 2억미만 5천만원이상인 학술용역건(일반경쟁입찰)에 대하여 공고 및 재공고를 하였으나, 1개의 동일업체만 투찰하여 유찰되었고, 그 후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하였으나 재차 상기 업체만 투찰하여 유찰된 경우, 상기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은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 제251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IV-2에서는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건 질의에서와 같이, 동 예규 IV-2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토록 안내하였으나 1개 업체만이 참여하였다면 IV-1-(2)-가-⑧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2인 이상 수기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1. 동일 실적제한 관련 질의

■ 질의 ■

- 행정안전부 예규 제257호(2007.10.5)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 운영요령 중 계약 담당자가 제한을 금지해야 할 사항 중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제 동일 실적에 해당됨에도 입찰 참가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에 자료처리업의 취급업무인 자료관DB, 행정DB, 지적DB, 제적부DB 구축실적이 동일 실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

- 발주 관청에서 일반 경쟁입찰로 시행시 사업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40호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 운영요령에 근거하여 실적제한이 가능하며,
- 동 예규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제 동일실적에 해당됨에도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정명칭의 실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 기관의 질의사항인 자료처리업의 취급업무인 자료관DB, 행정DB, 지적DB, 제적부DB는 실적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실적에서 배제할 수는 없으나 구체적으로 동일 실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2. 하자담보 책임기간 관련 질의

| 질 의 |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수한 부분은 당초 해당 공사에 적용된 하자보수책임기간을 다시 적용·연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령 제69조는 하자담보책임 및 그 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시행규칙 제68조 및 시행규칙 별표1은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공종에 따라 하자 발생기간 및 빈도 등의 특성이 다른 것을 고려하여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다르게 규정함으로써 공사의 하자보수가 원활하고 책임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렇게 공종별 특성이 이미 반영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하자보수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중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를 보수하였다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나, 하자보수를 하면서 당초 시공된 물량을 초과하여 시공하거나 당초상태를 변경하여 개보수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현장상태 및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자가 최종 판단·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3.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적용에 관한 질의

| 질의 |

- 행정자치부 예규 제25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의 적용 시점이 동 예규 시행일 이후에 발주된 공사에 한정되는지, 그리고 예규 시행일 이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도 사후정산이 되는지

| 회신 |

-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예규 제250호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에도 동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입찰에 관한 서류는 그 공사의 입찰공고시부터 효력을 가지므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은 ’07.3.27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일인 ’07.4.2일 이후 입찰 공고된 공사의 계약분 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는 유의사항을 ’07.4.2일 각 시도 및 교육청 등에 통보하여 ’07.3.27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 작성요령」의 적용시점을 “경쟁입찰인 경우는 ’07.4.2일 입찰공고분부터, 수의계약인 경우는 ’07.4.2일 계약체결분부터”라고 명확히 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4.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 질의 |

□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행사 운영 대행사 선정 공모 공고를 실시 중 법인등기부등본의 명칭과 사업자등록증의 법인명(단체명)이 불일치하고 사업자등록증의 법인등록번호와 법인등기부의 등록번호는 일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입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의 규정에 용역의 경쟁 입찰등록은 ④ 등록신청서, ④ 관련되는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 ④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④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④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규칙 제16조 규정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서류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제5호의 가목 내용과 같이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입찰무효 사유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입찰등록 당시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과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그 사유가 「학교기업의 설치 · 운영에 관한규정」 등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국세청 등에 확인필요)에 해당 된다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증빙자료를 보완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II. 수의계약 관련 질의모음(II)

1. 계약방법에 대한 질의

| 질의 |

- 무인경비용역 시스템을 통합시스템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본청 및 외청 시설 모두에 대하여 다른 1개 업체로 변경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시설별로 계약하면 수의계약 조건이고, 일괄 계약으로 하면 입찰대상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 하는지 여부

| 회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재정법·지방계약법 등 회계관계법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계약체결을 하는 것이고,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간, 또는 다른 기관에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므로 분임경리관이 다르다하여 통합발주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 동일 종류의 계약이더라도 집행기관이 다른 경우 계약조건·기간 등이 다를 수 있어 통합발주 여건이 선행되지 아니하면 계약조건에 위배될 수 있고, 지역특성 등을 반영하여 기관별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경우 계약법령에 적합하게 수의계약을 한 것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다만, 예산은 가능한 집중관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예산절감 등을 할 수 있으므로 통합 발주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 설계용역 전자견적 최종 낙찰자 결정관련 질의

| 질의 |

- 질의 1) 1천만원 이상 설계용역건으로 공고문에 “총액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의 90%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로 공고하고 개찰시 최저 낙찰률을

87.745%로 설정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였을 경우 입찰참여 업체 중 어느 업체가 최종 낙찰업체로 선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 질의 2) 또한 발주처에서 설계용역입찰 공고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안부 예규)”에 의한 설계용역건을 최저낙찰률을 87.745%로 적용하질 않고 90%로 적용했을 경우 관련법에 저촉 되는지 여부

■ 회신 ■

- **질의 1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소액수의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 1천만원이상 견적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하한율 87.745%를 적용하여 견적제출안내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견적제출안내 공고문에는 90%로 명시하고 87.745%로 개찰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에 속하므로 공고 및 입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견적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할 것이나, 착오 정도가 심하여 치유할 수 없는 하자에 속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견적제출공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은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자의 수의계약 업무수행에 필요한 처리절차를 정한 회계예규이나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견적제출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므로 입찰공고에 명시한 회계예규 등의 내용과 달리 시행하는 경우 공고기간 중에 이의신청 등을 하여 정당하게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 문제가 발생한 후에는 견적참가자간에 이해관계가 얹혀 대부분 해결이 곤란하게 되니 공고기간 중에 정정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 질의 ■

-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관내 주요 연도변 풀베기 작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000천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 정식 설계로 인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관내 지리에 어두운 업체가 선정될 경우로 인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따라서 수의계약 운영요령(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인 물품 · 용역으로서 계약목적 · 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하면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 귀 질의의 경우 동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동 사업은 직영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적의 판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4. 수기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관련 질의**| 질 의 |**

- 공개수의계약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행사진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예정금액(부가세포함) 25,000,000원 예상] 꼭 공개수의계약(G2B이용)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타견적(2인 이상) 있으면 G2B를 이용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바.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하한율 90%를 적용하여 최저가 견적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은 3~5일간이므로 긴급한 사유는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5.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적용의 범주에 관하여

| 질 의 |

- 공공기관의 입찰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의 해당 금액 범위안의 입찰의 경우
동 예규를 펼히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 계약방법 결정은 계약담당자가 당해 계약의 목적 · 성질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이며, 금액기준에 의하여 일반경쟁 · 지역제한 · 실적제한 또는 수의계약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한 입찰 및 계약방법 중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 일반경쟁입찰은 면허 등 자격요건만 갖추면 제한없이 입찰참가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은 실적 · 지역 등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입찰은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계약하는 방법입니다.
-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은 각 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제5호의 규정은 일정금액 이하를 소액수의로 분류하여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따라서, 계약방법은 금액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그 계약방법의 규정이 정한 내용에 따라 집행하는 것입니다.
- 계약담당자가 당해 계약의 성질 · 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계약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대상 금액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경쟁입찰이 유리한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할 수 있으며, 소액수의경적으로 계약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동 요령이 정한 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입찰자가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경쟁 입찰인 때에는 ‘전자입찰공고’, 수의계약인 때에는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6. 수의계약 평가요소 항목 중 전차계약 금액의 해석여부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안부 예규)의 다) 평가기준의 기술사항 ①하자 ②공사 규모비의 평가요소 항목 중 전차계약 금액의 해석여부
- 갑설 : 하자공사기간이 남아있는 동일체 구조물(방파제)의 계약금액 총합을 전차금액으로 인정
 - 을설 : 하자공사기간이 남아있는 동일체 구조물(방파제)중 바로 전해에 계약체결된 금액 만 전차금액으로 인정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수직적 기초를 같이 하거나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접합시키는 경우로서 전차공사의 하자보증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하자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할 수 있는 바,
- 수의계약대상공사평가표의 공사규모비 평가항목은 전차계약금액 대비 금차예정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고, 하자보수보증기간 평가항목은 전차공사의 하자보증잔여 기간 대비 금차공사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전차계약금액은 하자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전차공사의 계약금액을 적용하되,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최종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전차공사의 각 차수별 계약체결된 부분만을 합산하여 전차계약금액으로 적용하며, 전차공사의 하자보증잔여기간은 수의계약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해당일수를 산정하고, 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종의 하자보증잔여기간으로 산정하며, 금차공사기간은 설계서에 정한 공사기간을 적용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서, 계약상황, 공사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의계약대상공사 평가기준의 정한 바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7. 소액수의계약 전자견적 제출시 기술자보유증명서 제출여부 질의

■ 질의 ■

- 지자체 수의계약운영요령 관련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g2b)을 이용해 낙찰을 받았을 경우,
- 질의 1)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지?
- 질의 2)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꼭! 진흥협회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 질의 3)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보면 IV.1.(2).가.④, ⑤ 인력보유상황 또는 기술인력 보유상황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자보유증명서는 관련협회(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에서 발부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닌지요?
- 질의 4) 결격사유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당해 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기술용역업(조경설계, 수자원설계 등)에도 이 결격사유가 적용되는지요?
- 질의 5) 수의계약은 지자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과는 무관한 게 아닌지요?

■ 회신 ■

- **질의 1,2,3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 있어서 G2B로 견적 제출하여 낙찰된 경우 기술자보유현황으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견적서제출일(투찰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당해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종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됩니다. 기술자보유현황은 견적서제출일(투찰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거나 협회 전산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 **질의 4에 대하여)** 결격사유 ⑥는 조경 · 수자원 설계 등 건설기술용역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질의 5에 대하여)** 기술용역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60일이내 기술자 보완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보완하여 제출하면 되나, 소액수의견적에 있어서는 계약이행능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결격사유 평가 항목을 두고 견적서제출일(투찰일) 현재의 기술자보유현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8. 수의계약 및 1인 견적 가능여부 질의

| 질의 |

□ △△시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우레탄(육상트랙) 및 상수도 관로보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액 40,000천원) 2007년도에 시공하여 아직 하자보 수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지적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1인 견적에 의한 수의 계약이 가능하지 여부

| 회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도장·상하수도 보수공사 등은 전문건설공사로 하자구분이 곤란하거나 호환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며, 하자보수보증 기간 중에 보수 등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노후 또는 하자발생 여부를 검토하여 책임한계를 분명히 한 후 발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육상트랙 우레탄도장공사 및 관로공사가 특허 또는 신기술에 의한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할 것입니다.

9.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대하여 질의

| 질의 |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보면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미달인 경우에는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나와 있는 기술인력이 미달로 되어 있어도, 적격심사제출시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 계약의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일에 전 인원을 보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시까지 업종등록 기술인력을 보유하여 계약을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 있어서 결격사유 ⑥중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견적서제출일(투찰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당해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종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며, 기술자보유현황은 견적서제출일(투찰일) 기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거나 협회 전산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기술인력 보유확인서가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적격심사절차가 있어 기술자 보완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보완하여 제출하면 되나, 소액수의견적에 있어서는 적격심사없이 개찰과 동시에 사실상 낙찰자결정이 이루어져 견적서제출일(투찰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견적서제출일(투찰일)에 기술자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0. 소액수의 견적입찰시 지역제한 관련 질의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의 일반공사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해 2인 이상 견적을 제출받는 “소액수의 견적입찰”的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당해 시군의 인접시군으로 지역제한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인접하지 않은 인근 시·군을 포함하여도 되는지요?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소액수의계약에 있어서 견적제출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IV-1-(2)-가-②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군, 당해 시·군과 인접 시·군, 당해 시·군과 인접자치구(일부 또는 전체), 전체 자치구, 당해 시·도, 당해 시·도와 인접 시·도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시·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직접 접하지 아니한 시·군을 포함하여 지역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11.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 발주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가능여부 질의

| 질 의 |

□ 저는 △△환경산업의 대표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이 혼가가 나지 않으며 현재 없는 상태이며, 건설폐기물수집운업체만 2곳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발주시 수집운반업체 지역관내로 입찰을 제한하고 면허 보완을 위하여 인접 시군의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소액수의(3,000만원이하)입찰 공고가 g2b를 통하여 투찰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소액수의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IV-1-(2)-가-②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당해 시·군과 인접시·군, 당해 시·도, 당해 시·도와 인접시·도 등으로 견적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고, 지역 사업자는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당해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야 견적제출자격(참가자격)을 갖추게 되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견적제출자격을 당해 시·군 지역사업자로 제한하고 인접 시·군의 사업자를 공동 수급체 구성원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12. 소액수의 계약에 대하여 질의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3.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에서 소액수의계약에서 공사 중 문화재공사업은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전문공사, 아니면 8천만원 이하인 전기, 정보통신, 소방, 기타공사에 해당되는지요? 적격심사기준에는 문화재공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문화재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에 해당하여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3. 공사발주 전 추가부분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

| 질 의 |

- 지하1층 지상3층의 동사무소를 신축하려고 합니다. 이미 실시설계용역과업이 완료된 상태에서(준공처리되었음) 지역주민의 지하 2층으로의 끊임없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도는 주차장 확충) 만약 지하 2층으로 가게 된다면 지하2층에 대한 추가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업체에 문의한 결과 추가 설계비용은 2,500~3,00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런 경우라면 계약법시행령에 의하면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 판단하여 특정인의 용역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그래서 1인 계약으로 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 · 용역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이는 특정인의 기술 · 용역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에 한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설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14. 특허에 따른 수의계약 질의

| 질 의 |

- 지중열을 이용한 비닐하우스의 냉, 난방 에너지 비용절감과 저렴한 대체에너지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화산 암반층내 무한대로 존재하는 지하공기를 이용한 시설공법 특허등록(제10-0628466)된 바,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호 마, 바, 사, 아 목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 하우스내 물관리의 문제해결은 정밀한 토양수분측정에 있으며, 시중에 판매되는 토양 수분 측정센서가 몇 종 있으나 대부분 수입품이며 고가인 반면 작은 고장과 A/S가 안되는 점 때문에 보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에 정밀한 수분감지용 센서가 개발되어 특허등록결정되었으며, 아울러 최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유비쿼터스 시스템이 개발되는 등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호 마, 바, 사, 아 목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특허공법 및 신기술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호 마 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고, 특허 등을 받은 물품으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 귀 질의의 경우 공사는 경쟁대상이 있는지 여부, 물품은 다른 대체품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여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므로 당해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품질·성능·가격·경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의 판단하시기 바라며 금액기준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15.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질의

| 질의 |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요즘은 대부분 공개입찰로 인해 수의계약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읽어보니 VII. 지정정보처리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중에서 기존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의 항목을 보았습니다
- 일정기간 마을 상수도 유지계약을 맺고 수행하던 중 정수장치의 보수를 유지계약기간 중에 따로 수선계약을 체결한 후 완료하고 유지관리계약을 끝낸 경우 위의 수의계약운영 요령 요건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 정수장치를 수선했을 때 수선한 업체가 아닌 타업체가 유지관리를 맺을 경우 A/S문제 등에서 서로 미룰 경황이 있고 몇 개월 유지관리 계약일 경우에는 마을 상수도의 특성상 기존 업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 회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기존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 물품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이는 전산시스템·특허설비 등과 같이 시스템개발자 또는 특허·신기술 등 보유자가 아니면 유지보수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전문업자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유지보수의 경우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계약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16. 수의계약 전자견적 입찰 공고시 관련 질의

| 질의 |

- 소액 수의계약 대상인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송대행 용역건으로 참가자격을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쇄업(사) 신고를 입찰지역에서 필한 업체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해당지역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공고시 인쇄업신고가 해당지역에서 필한 업체로 지정할 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소액수의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하여 견적제출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고 계약특성상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적, 규격, 품질, 인력·기술·장비·시설보유상황, 시공여유율 등의 방법 중 하나로 견적제출방법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인쇄업신고를 해당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 마을회관 공사계약 관련 질의

| 질의 |

- 질의 1) 정부의 지원금(주민지원사업)으로 건축되는 마을회관 같은 공사는 국제법이나
지계법의 적용을 받는지요? 아니면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질의 2) 그 법에 의하여 마을회관 같은 몇 억되는 공사를 계약은 공개입찰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가능한지요?

| 회 신 |

- **질의 1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 보조금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므로 보조금 지원주체에 따라 적용법령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에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여 집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는 경우 경쟁입찰이 원칙이므로 추정가격 2억원 초과 건축공사는 적격심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 추정가격 2억원 이하 2천만원 초과 건축공사는 수의계약대상으로 견적입찰(낙찰하한율 87.745%)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하는 사항이므로 지원주체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